의안번호	제 23 호
의 결	2022년 월 일
연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08월 30일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지헌 의워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

발의연월일 : 2022년 08월 30일

발 의 자 : 박지헌,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위원회 당연직 대상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 명칭 및 위원 명칭 변경(안 제3조)

- "충북지방경찰청" → "충청북도경찰청"
- "기무부대장" → "337군사안보지원부대장"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라. 조례안 예고 : 생략(「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4호)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을 "충청북도경찰청 경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충청북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5. 충청북도경찰청장
- 11. 337군사안보지원부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③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5. 충청북도경찰청장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u>11. 기무부대장</u>	11. 337군사안보지원부대장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	4
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	
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경찰담당간사 : 충북지방경찰	5 <u>충청북도경찰</u>
청 경비교통과장	청 경비과장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⑤ 충청북도 내 통합방위상황	⑤
발생시 협의회 운영 및 업무의	
처리절차는 도지사, 제37보병사	
단장, <u>충북지방경찰청장</u> 이 공동	<u>충청북도경찰청장</u>
으로 협약한 충청북도통합방위	
예규에 의한다.	.

관계법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명칭 등) 시·도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시 · 도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제38조 관련)

명칭	위치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경찰청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남부경찰청	경기도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도
강원도경찰청	강원도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북도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
전라북도경찰청	전라북도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비고: 판서의 현판·각종 표지판 등의 표기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서울철청"으로, "부산광역시경찰청"은 "부산경찰청"으로, "대구광역시경찰청"은 "대구경찰청"으로, "인천광역시경찰청"은 "인천경찰청"으로, "광주광역시경찰청"은 "광주경찰청"으로, "대전광역시경찰청"은 "대전경찰청"으로, "울산광역시경찰청"은 "울산경찰청"으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세종경찰청"으로, "경기도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경기도북부경찰청"은 "경기북부경찰청"으로, "강원도경찰청"은 "강원경찰청"으로, "충청북도경찰청"은 "충북경찰청"으로, "충청남도경찰청"은 "충남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은 "충남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은 "전북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은 "전남경찰청"으로, "경상남도경찰청"은 "건남경찰청"으로, "경상남도경찰청"은 표건 "경남경찰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제주경찰청"으로 표기할 수 있다.